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91 발의연월일: 2020. 12. 15.

발 의 자:이만희·정점식·임이자

안병길 · 송석준 · 김태흠

윤두현 • 권성동 • 이철규

엄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조종면허 등 인적 안전기준", "등록 및 검사 등 물적 안전기준",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의 기본원칙", "수상레 저사업"이 하나의 법률로 복잡하게 구성 되어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초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99년) 될 당시와 달리 현재 수상레저는 다수 국민들의 보편적인 여가활동으로 변화하는 등 수상레저인프라는 급속히 확대되어 왔고, 최근 등장하고 있는 신종·변종 레저기구 등 새로운 레저환경의 변화로 「수상레저안전법」이라는 단일법으로는 탄력적인 대응 및 수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기술적·전문적 분야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와 관련된 부분을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분리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더 이해하기 쉽도 록 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의 수상레저활동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근거 마련(안 제5조)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나. 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및 부착의무화 근거 마련(안 제16조, 제17조)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유자의 안전검사 유효기간 확인이 용이하도록 안전검사에 합격할 경우 안전검사필증을 발급받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함.
- 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시 활용되는 선체·기관 등의 설비, 무선설비, 위치발신장치 등의 설치·비치 등에 관한 안전기준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임에도 법률 상 근거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정하고 있어 이에 관한 기준을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함.

라. 양벌규정 신설(안 제31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활용하는 수상레저사업장,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건조, 개조, 수리하는 사업체 등에서 특정 행위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할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라 이익 등을 얻게 될 법인 또는 사용주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인 또는 사용주등으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도록 하는 효과를 도모하기위함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것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 레저활동을 말한다.
- 2.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 저기구를 말한다.
- 3.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 4. "수상"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상을 말한다.
- 5.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수면을 말한다.
- 6.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내수면을 말한다.

- 7. "운항구역"이란 수상레저기구 운항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기구의 크기, 구조, 설비 등을 고려하여 최대로 운항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톤수, 마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수상오토바이
 - 2. 모터보트
 - 3. 고무보트
 - 4.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제4조(적용 배제)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제5조(사무의 지도·감독)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으로 규정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 제6조(등록) ① 동력수상례저기구(「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득한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날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동력수상례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1. 등록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 2.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와 장치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검사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등록원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을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소유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록원부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등록증·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소유자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과 등록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동력수상례저기구의 소유자는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이 없어지거 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 고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증·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변경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제10조의 말소등록은 제외한다)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하다.
- 제10조(말소등록) ① 소유자는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증의 분실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2.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존재 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3. 총톤수·추진기관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동력 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된 경우
- 4.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출하는 경우
- 5. 수상레저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이내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동력수상레저기 구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제11조(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 다목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소유권 의 득실변경은 해당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제12조(압류등록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이나 「지방 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는 해당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 해제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해제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등록 및 해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 상레저기구의 잘 보이는 곳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시험운항의 허가) ① 제15조제1항제1호의 신규검사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시험운항(조선소 등에서 건조·개조·수리 중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를 비치 또는 보유하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시험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②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은 시험운항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운항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시험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험 운항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④ 시험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시험운항허가증에 기재된 시험 운항의 목적, 수역을 준수하고, 제1항에 따른 안전장비를 비치 또는 보 유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야 한다.
-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의 신청 및 시험운항허가증의 반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

- 제15조(안전검사)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신규검사 :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2. 정기검사: 제6조에 따른 등록 이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3. 임시검사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가. 정원 또는 운항구역
 - 나.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구조, 설비 또는 장치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그 밖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 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는 시기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절차, 방법, 준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 제16조(안전검사증·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1 8조제1항의 검사대행자(이하"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검사필증의 발급은 제 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에 해당 동력수상레저 기구의 운항구역·정원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동력수상례저기구의 소유자는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등에게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운항구역·정원 등의 지정, 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증 · 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

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 제17조(안전검사필증의 부착 등) 안전검사필증의 부착, 회수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판"은 "안전 검사필증"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경찰청장등"으로 본다.
- 제18조(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동력수상레저기구 검사원의 수, 검사시설·장비 등의 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대행자에 대한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① 해양경찰청장은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한 경우
- 3. 제18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4.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종사자 교육) ① 제18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행 기관이나 단체에서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한다. 다만, 검사업무의 기술적·전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 기준

- 제21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설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갖추어야 한다.
 - 1. 선체
 - 2. 기관

- 3. 배수설비
- 4. 돛대
- 5. 조타·계선·양묘설비
- 6. 전기설비
- 7. 구명·소방설비
- 8. 전기설비
- 9.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 제22조(무선설비)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한무선설비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승선정원, 항해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안전 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는 경우 무선설비를 작동하여야 한다.
- 제23조(위치발신장치)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위치, 기구 제원 등에 관한 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승선정원, 항해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치발신장치를 갖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동력수상레저기 구를 운항하는 경우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가 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 제24조(기타 안전기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외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복원성,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설치 또는 비치되는 물건 등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 제25조(과징금) ① 해양경찰청장은 검사대행자가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그 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

- 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제2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등록·변경등록·말소등록 등을 신청하려는 자
 - 2.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원부 사본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 3.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받으려는 자
 - 4.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 5.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대행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대행자에게 내야 한다.
 - 1. 제16조에 따라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 2. 제18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안전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검사대행자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검사대행자의 수입으로 한다.
- 제27조(청문) 해양경찰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

- 소, 업무정지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검사대행자의 임직원 및 안전검사 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사람
 -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험운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 레저기구를 운항한 사람
 - 3. 제15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 하지 못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사람
-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동력수상 레저기구를 유항한 사람
 -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 5.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한 자
 - 6. 제20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9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2. 제10조제2항에 따른 말소등록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 4.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험운항의 목적, 수역을 준수하지 아니하 거나, 안전장비를 비치 또는 보유하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사람
- 5.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6. 제17조를 위반하여 안전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 7. 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사람
- 8. 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사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안전검사필증 부착의 적용례)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필증의 부착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부터 적용한다.
-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 제4조(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 전법」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조의3, 제35조에 따라 동력수상레 저기구에 관한 신규·변경·말소·압류 등록, 등록번호판 부착을 한 자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신규·변경·말소·압류 등록, 등록번호판 부착을 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 전법」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제15조에 따라 안전검사 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6조(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을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제18조에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을 지정받은 것으로본다.
- 제7조(종사자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례

저안전법」 제16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안전검사 업무 대행 기관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자는 제20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8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수료를 내어야 하는행위에 대하여 수수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에따른다.
- 제9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다.
- 제10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다.
- 제11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수상례저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 중 "같은 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 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 제26조제8호 중 "요트"를 "세일링요트"로 한다.
 - ②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다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수상레저안전법」"을"「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2호 중"「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를"「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④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3항 각 호"를"「수 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

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